

1차년도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상권활성화 사업

**[재공고] 숯품 플랫폼 용역
과 업 지 시 서(긴급)**

2026. 07. 21.

부산대자율상권조합

1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가. 상권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과 숏츠, 릴스, 틱톡 등 다양한 SNS 동영상 홍보 그리고 숏폼 플랫폼 채널 개설등 다양한 홍보 영상 제작 진행으로 홍보 강화를 하기 위함.
- 나. 공식 SNS 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을 통해 상권 인지도를 제고 하고, 인플루언서 협업 및 숏폼 공모전 등 참여형 마케팅 전략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최종적으로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가. 과 업 명 : 『숏폼 플랫폼』 용역
-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30일까지(*협약에 따라 과업 기간 변경 될수 있음)
- 다. 과업장소 : 부산대자율상권 구역 일원
-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마. 과업예산 : 금 68,000,000원(금 육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본 사업은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장조사, 원가계산, 과업내용에 관련한 사업비, 경품, 기타 운영비, 부가세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
 - ※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의 사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부산대자율상권



나.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은 『부산대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해 상권 구역 현장 조사와 조합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 진행
- 본 과업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이하 “발주기관”이라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와 기본계획과 전략 기획에 의한 일체의 실행용역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과업일정과 용역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 **모든 과업은 조합 및 상권기구의 승인을 거친 후 운영**
- 주요 사업 내용
 - 1)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월까지
(* 협의에 따라 과업 기간 변경 될수 있음)
 - 2) 다각적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위한 채널 개설
 - 3) 부산대자율상권조합 및 상인의 의견 취합 및 조사 진행
 - 4) 부산대자율상권 홍보를 위한 참여형 마케팅 전략 슷폼 및 영상 공모전 진행
 - 5) 부산대자율상권의 대표 홍보 영상 및 아카이빙 영상 제작 (3편 이상)
 - 6) 상권구역내 슷폼 홍보 영상 제작 희망 상점가 모집 및 선정을 통한 슷폼 홍보 영상 제작 진행 (30편 이상)
 - 7) 플랫폼 영상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영상 기획, 연출, 출연자 섭외, 촬영, 편집 등 전체
 - 8) 시나리오 및 슷토리보드, 콘티 작성 및 배경음악, 각종 효과음
*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음악 사용
 - 9) 수행기관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을 기획·운영에 대해 수상자에게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시상금 총액(제안 금액의 8%~10%내외)기준으로 하며, 본 금액은 용역비용에 포함된 금액임,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수상자에게 지급하며, 추후 정산 서류(이체확인증 및 확인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기타 심사 방법 및 지급 방식등 세부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10) 과업수행자는 영상 결과물의 확산 및 상권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순수 매체 광고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완료 후 플랫폼별 조회수등 성과 지표가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행전 세부 매체별 진행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 11)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장조사, 원가계산, 과업내용에 관련한 사업비, 경

품, 기타 운영비, 부가세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 한다.

- 1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 및 운영 방안 수립

- 1) 공식 채널(글로벌) 개설: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등 상권 타깃층(MZ세대 및 대학생, 관광객/외국인 등)에 적합한 SNS 채널 신규 개설 및 프로필/스킨 디자인 제작
- 2) 다국어 지원: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타깃층을 고려하여 주요 게시물 및 영상 내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번역 자막 및 설명문 반영
 - 정기적인 글로벌 콘텐츠 업로드 및 댓글 소통(업체 제안)
- 3)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채널별 톤앤매너 설정, 월간/주간 콘텐츠 업로드 스케줄러 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포함
- 4) 채널 활성화: 타깃 광고 집행(예산 내 집행), 구독자 및 팔로우 수 증대를 위한 정량적 목표 설정 및 달성
- 5) 채널별 성과 분석
 - 제작된 릴스별 조회수, 팔로워수 획득, 인게이지먼트 측정(좋아요, 댓글, 공유수, 퍼가기 등) 지표 분석
 - 고조회율 콘텐츠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 도출 및 내부 제작 가이드라인 구축
- 6) SNS 채널 관리자 계정 양도 증서(개설한 모든 채널의 소유권 이전) 또는 발주자 계정 개설

나. 상인 의견 수렴 및 상점가 홍보 슷폼 제작 희망 업소 모집 및 선정

- 1) 의견 수렴: 조합과의 간담회(최소 3회 이상) 와 설문조사를 통해 상인들의 요구사항 및 홍보 희망 사항 취합
- 2) 상점가 선정: 발주처 및 조합과 협의하여 홍보 희망 상점 20개소 이상 선정 - 협의
- 3) 슷폼(Short-form) 제작: 선정된 업소별 맞춤형 슷폼 영상(릴스, 쇼츠, 틱톡 등 1분 이내) 제작(총 20편 이상) - 협의
 - 내용: 점포별 대표 메뉴, 상품, 차별화된 슷토리, 찾아오는 길 등 직관적 홍보

다. 부산대 및 자율상권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 1) 브랜딩 콘텐츠: 부산대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부산대자율상권의 매력을 연계한 슷토리텔링형 콘텐츠 기획
- 2) 상점가 슷폼 활성화: 부산대자율상권 내 주요 거리, 맛집 골목, 포토존 등을 연계한 트렌디 한 슷폼 영상 추가 제작(총 10편 이상) - 협의

- 3) 채널 상시 운영: 제작된 영상을 기반으로 주 1회 이상 정기 업로드 및 댓글 소통, 모니터링 진행

라. 대표 홍보 영상 및 아카이빙 영상 제작

- 1) 대표 홍보 영상(1편)
 - 분량: 풀버전과 30초 내외 요약본
 - 내용: 부산대 자율상권의 전체적인 비전, 활력 넘치는 분위기, 핵심 앵커 시설 등과 외국인 친화적 요소를 결합한 감각적으로 연출한 고품질 영상(시나리오, 성우 녹음, 자막 포함)
- 2) 아카이빙(기록용) 영상(1편)
 - 분량: 풀버전과 30초 내외 요약본
 - 내용: 상권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시나리오, 성우 녹음, 자막 포함)
- 3) 상점가 종합 홍보 영상(1편)
 - 분량: 풀버전과 30초 내외 요약본
 - 내용: 본 사업의 추진 과정, 상인 간담회, 축제/이벤트 현장 스케치, 구역별/테마별 상점가를 묶어 소개하는 종합 가이드 형태의 영상 (시나리오, 성우 녹음, 자막 포함)

마. 부산대 자율상권 활성화 솜품 공모전 기획 및 운영

- 1) 공모전 기획: 대학생 및 일반인 및 외국인 유학생·관광객 대상 부산대자율상권구역내(상점가, 맛집, 핫플 등) 주제의 솜품 공모전 계획 수립 (시상 규모, 심사 기준 등 발주처 협의)
- 2) 홍보 및 접수: 다국어 포스터 디자인 제작, 대학가/온라인(외국인) 커뮤니티 홍보, 참가자 접수 및 문의처 등 총괄 운영
- 3) 심사 및 시상: 심사 및 대중성 심사 등(좋아요/조회수 등) 진행, 수상작 선정 및 시상식 운영 등 세부 진행 방식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
- 4) 경품/상금 지급: 수상자 상금(온누리상품권 또는 사은품등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 지급 및 제세공과금 처리 대행
- 5) 출품작 활용: 공모전 수상작 및 우수 출품작을 공식 SNS 채널에 업로드하여 2차 홍보 콘텐츠로 활용
- 6) 공모전 수상작 영상 파일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상금/경품 지급 증빙 서류(통장 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사전 협의)

바. 매체 광고 편성 및 집행(총 사업비의 20% 이상)

- 1) 광고 예산 편성: 과업수행자는 영상 결과물의 확산 및 상권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타깃 맞춤형 순수 매체 광고비(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로 의무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

2) 광고 집행 계획 수립

- 착수 보고 시, 제작 예정인 영상(대표 영상 및 숏폼 등)과 공모전 홍보를 위한 채널별·시기별 세부 매체 광고 집행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 타깃층(학생, 인근 지역 주민, 부산 거주 외국인과 외국 관광객 대상 등)의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광고를 설계해야 함
- 국내 와 해외 광고 홍보 계획 수립
- 특히 외국인 타깃은 해외 유저의 이용률이 높은 글로벌 플랫폼 홍보 광고 계획 수립(예시: 중국권-샤오홍슈, 마펑위 등)
- 성과 목표 책정: 매체 광고 집행에 따른 채널별 노출 수, 조회수, 참여도(좋아요, 공유 등)에 대한 정량적 목표치(KPI)를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고 달성해야 함

3) 모니터링

- 매주 모니터링 현황과 도달률 분석 데이터를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 과업 진행 KPI 수립 및 방안 제시

바. 기타 민원 관리 및 법리적/행정적 필수사항 시행

○ 법적 분쟁 및 책임

- 영상에 사용하는 내용은 전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용해야함
- 번역 오류로 인한 상권 이미지 실추가 없도록 전문 번역 및 검수를 거쳐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재작업시 책임 및 비용은 수행자 부담
- 권리 침해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비용은 수행자 부담
- 소송·손해배상·재출원 절차 전액 자체 해결
- 사업 진행 및 운영에 따른 각종 민원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사. 기타 사항

- 준비기간 및 진행기간 동안 과업 추진 현황 수시 보고 및 주요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 저작권 귀속: 본 용역을 통해 제작된 모든 영상, 이미지, 폰트 등의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짐.
- 초상권 협의: 상인 및 시민(외국인 포함) 촬영 시 반드시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취득해야 함.
- 경품 지급 방식은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제안 금액 범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쿠폰, 기타 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 단 지자체 및 관련법등 협의로 진행 방식 변경될 수 있음
- 유가증권지급대장 작성 및 제출(양식 제공)
-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제안 가능

4 과업의 진행

가. 과업 진도 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해야 하며, 자율 상권조합이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단, 일정 조율 필요시 협의)
- 착수 보고회 개최 : 계약일로부터 14일 내외
- 중간 보고회 개최 : 사업기간 2/3 경과 시점 내외
- 최종 보고회 개최 : 과업 완료일 1주전 내외

구분	보고명	보고횟수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회	1회	- 전체 개발 일정 및 진행방향	보고서 및 발표
	중간보고회	1회	- 과업 달성도 점검 및 보고	보고서 및 발표
	최종보고회	1회	- 과업 달성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	보고서 및 발표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즉시	- 발생 사유 및 이슈 사항 - 해결 방안 및 처리결과	서면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 안전 및 처리 방안 - 기타사항	서면 또는 구두

- 정기 주간보고(주 1회) 및 월간보고(매월 마지막 주) 제출
- 과업 기간 동안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사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회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어 참석을 요청할 시에는 회의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에 착수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보고는 과업 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진행에 따른 세부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도율을 조합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 원인 및 해소 방안, 일정 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사업계획 변경 시 조합에 사전 승인 후 시행
- 과업 수행사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추가 제안 사항등을 제안할 수 있음.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 작성기준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

어야 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 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은 색인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의 작성은 본 과업 중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함.
-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 작성하고,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 필요시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나. 성과품 승인 및 제출

-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 납품 완료일 10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함
-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은 최종 시안 승인 후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함.
-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의 한글파일 외의 디지털 자료, 즉 사진·일러스트 등 이미지·동영상 자료 등은 고화질로 용량을 최대화하여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성과품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제출, 추후 단행본으로 발간 가능하도록 편집 제작해야 함.

다.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최종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의 종이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양면 컬러(스프링 제본 불가)를 원칙으로 함.
- 모든 성과품, 보고서 작성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사전협의·검토 승인 후 인쇄를 시행.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결과물은 이동식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성과품 목록

※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 협의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필요수량은 증감사항 발생 시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계약 상대방은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특허권 등의 관련 문제의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구분	보고내용	규격	제출 부수	비고
최종 결과 보고서	• 완료계 및 사업 결과보고서 - 과업 세부 추진과정 및 수행 과정의 전반을 기록한 결과물(증빙사진, 영상, 회의록 등) - 과업 추진결과에 따른 성과 분석, 개선사항, 만족도 평가 등 종합 분석(채널 운영 통계, 이벤트 결과, 상인 만족도 등 포함) -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 기타 요청 자료	A4	5부	컬러판
성과품	- 모든 과업 내용이 담긴 폴더 - 사업 수행계획서, 세부계획서 - 수시 회의 자료 및 보고자료 - 정산보고서 - 사진 및 영상기록물 원본 파일 - 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 디자인 요소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JPG, PNG 파일, AI파일 등 제출	USB	1개	원본 제출

※ 계약 상대방은 결과보고서 제출 전 부산대 자율상권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6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 일정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 공정 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일정은 발주처와 수행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를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발주처"라 함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을 말함.

나. 안전 및 보안 저작권 책임소재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수행업체의 기술 인력은 발주처가 정하는 안전관리 책임과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책임관리자 등 관련 서류 제출
 -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방지 등 전반
- 본 과업의 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전제를 금하며, 임의로 유출해서는 안됨.
- 수행업체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됨.
- 본 과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저작권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형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종료 이후라도 수행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 발주처는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 및 편집하여 타 홍보물 또는 매체에 이용할 수 있고, 수행업체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 과업지시서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착수보고 진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함.
-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업수행자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함.

○ 담당자 등의 교체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책임담당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책임담당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책임담당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저작권 관련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이 발주처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의 수행도중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업종료 후 에도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발주처에 반납·납품하여야 함.

○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결정함.
-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 과업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가 있는 경우
 - 본 과업 일체를 하도급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 태풍, 집중호우 등 불가항력에 의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항목(인건비 등)은 협의하여 정산함.
-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또는 법인카드(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결과 결산금액이 계약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결산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하고, 그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기 타

- 용역진행 중일지라도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대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2026년 07월 21일

부산대자율상권조합